

| | |
|-------|-----------|
| 의안번호 | 제 40 호 |
| 의결연월일 | 2003. . . |

의결사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제출자 | 사천시장 |
| 제출연월일 | 2003. 11. 28. |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40 |
|----------|----|

제출일자 : 2003.11.28

제 출 자 : 사천시장

1. 개정이유

사천공군부대 확장 공사에 편입된 축동면 동치마을 주민이 용현면 신복리 일원에 집단으로 주택단지를 조성, 2002년부터 이주를 시작 현재 40세대가 구성됨으로써 이장의 업무증가와 각종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리의 신설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

2. 주요골자

이장정수중 용현면 신복리 정원 2명을 3명으로 함.(안 아래 표)

| 현 행 | | | | 변 경 | | | |
|-----|-----|----|--------------|-----|-----|----|------------------|
| 읍면동 | 이동명 | 정원 | 관할구역 | 읍면동 | 이동명 | 정원 | 관할구역 |
| 용현면 | 신복리 | 2 | 신복, 평기 일원 | 용현면 | 신복리 | 3 | 신복, 평기, 신영 일원 |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연 3,280천원 소요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03. 11. 1~2003. 11.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지방일간지 2개사, 전 읍면동 게시관 게시

(다) 의견제출 내용 및 반영 : 의견제출내용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조례 제 호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용현면 신복리의 정원란 “2”를 “3”으로 하고, 관할구역란 “신복, 평기 일원”을 “신복, 평기, 신영 일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 | | 개정안 | | | |
|---------------------|-----|----------|------------------|---------------------|-----|----------|----------------------|
| [별표] <u>이장정수</u> | | | | [별표] <u>이장정수</u> | | | |
| 읍면동 | 이동명 | 정원 | 관할구역 | 읍면동 | 이동명 | 정원 | 관할구역 |
| 용현면 | 신복리 | <u>2</u> | <u>신복, 평기 일원</u> | 용현면 | 신복리 | <u>3</u> | <u>신복, 평기, 신영 일원</u> |
| | | | | | | | |

관계법령발취

지방자치법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 ⑤ 洞·리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리를 2개이상의 洞·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리를 하나의 洞·리로 운영하는등 行政運營上 洞·리(이하 "行政洞·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이장의 임명)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읍장·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7.6>